

문화공간 및 시설사용 관리 규정 [2009. 10. 01-rev.01 2009. 12. 02-rev.02] 2016. 09. 01-rev.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시장, 공연장, 역사 및 차량기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9호선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간)

1개월 기준 동일 행사는 5일 이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관인)

공연 및 전시내용, 전시물 등에 대해 당사가 합당하고 공공목적에 부합한 기관 또는 개인이라 판단되면 대관인은 5영업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 시설물 사용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구역)

대관인은 당사가 지정한 구역이외의 지역에서 전시 또는 공연을 할 수 없다.
단, 전시장 공연장이 없는 역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전시 및 공연내용)

1.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이어서는 안되며, 종교 등 특정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범용성과 대중성을 근거로 한 공연, 작품 또는 전시물이어야 한다.
2. 전시·공연 개시 후라도 전시내용에 대한 9호선의 부정적 판단 또는 민원의 제기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당사는 전시 또는 공연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대관인이 향후 대관 신청을 할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행사 진행을 불허할 수 있다.
3. 전시·공연의 사전 준비기간(전시물 이동, 장비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3영업일전에 당사로 전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공의 정서의 반하는 음란·외설 등 주제의 공연 및 전시는 할 수 없다.
5. 전시·공연시 상업목적의 판매 내지 모금은 할 수 없다.

제7조(대관료)

1. 대관에 따른 대관료는 별첨1와 같이 부과한다.
2. 대관료의 납부는 대관예정일 1영업일 이전에 당사 지정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앙정부, 지자체, 관공서, 학교 등의 직접주관 또는 협조를 득한 대관인의 경우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소리제한)

1. 전시의 경우 무음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최대 음량을 40db까지로 한다.
2. 공연의 경우 최대 음량을 60db이하로 한다.

제9조(전기료)

대관인은 별도의 조명 및 음향장치등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1일 최대 10KW/H 이내)로 1일 20,000원(VAT별도)을 당사에 납부 한다.(별첨1 참조)
단, 중앙정부, 지자체, 관공서, 학교 등의 직접주관 또는 협조를 득한 대관인의 경우는 전기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진행인원)

공공대중시설물의 특징상 역사내 질서 유지와 승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전시·공연 운영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1. 공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준비는 최대 개최일 2일전부터 설치작업이 가능하며, 9호선 기존 시설물에 파손, 망실 등에 대한 모든 물질적 보상 등은 대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설치에 따른 모든 제반 기자재들은 대관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3. 설치작업은 승객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후 22시~익일 01시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1. 개최 완료일 익일 오후10까지 철거 등 원상복구를 완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익일 오전 10시까지 9호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연·전시시간에 발생된 모든 쓰레기 등은 대관인이 역사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3조(치명적사고)

전시·공연 기간 중 전시·공연으로 인해 야기된 인명의 피해, 화재 등 손실발생시 대관인이 단독으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책임)

개최기간 전시·공연 등과 관련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대관인은 이에 대한 여하한 책임 (민·형사상책임 포함)등을 져야하며 당사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별첨1]

일일 대관료 및 전기료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해 당 역 사	대 관 료	전 기 료	비 고
“가” 군	당산, 샛강, 고속터미널, 신논현	150,000원	20,000원	
“나” 군	신방화, 신목동, 등촌, 여의도, 노량진, 국회의사당, 흑석, 동작	80,000원	20,000원	
“다” 군	김포공항, 공항시장, 양천향교, 가양, 증미, 염창역, 선유도, 노들, 구반포, 신반포, 사평, 마곡나루	50,000원	20,000원	